

의안번호	2201262
의 퇴 인	임종득의원
회 답 일	2024. 6. 14.
추 계 번 호	24B064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후계·청년 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1억원, 2029년 55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165억원(연평균 33억원)으로 추계됨
- 국비: 5년간 82억 5,000만원(연평균 16억 5,000만원)
 - 지방비: 5년간 82억 5,000만원(연평균 16억 5,000만원)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후계·청년 농어업인 정착지원센터 지정 등 (안 제13조의2 신설)	1,100	2,200	3,300	4,400	5,500	16,500	3,300
국비	550	1,100	1,650	2,200	2,750	8,250	1,650
지방비	550	1,100	1,650	2,200	2,750	8,250	1,6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3조의2 신설(후계·청년 농어업인 정착지원센터 지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u>후계·청년 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u> (이하 “정착지원센터”라 함)로 <u>지정·운영</u>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정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제2항) 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영농·영어 정착을 위한 상담 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영농·영어 정착을 위한 정보 제공 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영농·영어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영 컨설팅 5. 지역내 후계·청년농어업인 네트워크 지원 6.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착지원센터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13조의2 신설(후계·청년 농어업인 정착지원센터 지정 등)	○	•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참고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후계·청년 농어업인 정착지원센터 지정 등(안 제13조의2 신설)

- 개정안에 따라 후계·청년 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 지정·운영에 따른 지원 비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

- (연도별 정착지원센터 지정 수) 추계기간(2025~2029년) 동안 매년 농업인 및 어업인 정착지원센터를 각 1개소씩 신규 지정하는 것으로 가정
 - 농업인센터(누적): ('25) 1개소 → ('26) 2 → ('27) 3 → ('28) 4 → ('29) 5
 - 어업인센터(누적): ('25) 1개소 → ('26) 2 → ('27) 3 → ('28) 4 → ('29) 5
- (정착지원센터 1개소당 지원금액)
 - 농업인 정착지원센터: 매년 5억원/개소
 - ※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업인교류센터 지원예산(매년 5억원) 준용
 - 어업인 정착지원센터: 매년 6억원/개소¹⁾
 -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 [참고자료] 후계·청년 농업인 및 어업인 지원사업 및 지원예산 현황 참고
- (국비 및 지방비 분담률) 50:50
 - 이때 지원비용 및 분담률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계·청년 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165억원으로 추계됨
- 국비: 5년간 82억 5,000만원
 - 지방비: 5년간 82억 5,000만원

[표 2] 후계·청년 농어업인정착지원센터 지정·운영 및 지원경비 추계: 2025~2029년
(단위: 개소, 백만원/개소,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후계·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센터	누적 지정 수(A)	1	2	3	4	5	—
	지원단가(B)	500	500	500	500	500	—
	소계 (C=A×B)	500	1,000	1,500	2,000	2,500	7,500
후계·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센터	누적 지정 수(D)	1	2	3	4	5	—
	지원단가(E)	600	600	600	600	600	—
	소계 (F=D×E)	600	1,200	1,800	2,400	3,000	9,000
합계 (G=C+F)		1,100	2,200	3,300	4,400	5,500	16,500
	국비 (50%)	550	1,100	1,650	2,200	2,750	8,250
	지방비 (50%)	550	1,100	1,650	2,200	2,750	8,250

주: 1. 추계기간(2025~2029년) 동안 매년 농업인 및 어업인 정착지원센터 각 1개소씩 신규 지정하는 것으로 가정
 2. 연간 정착지원센터 1개소당 지원금액은 농업인 정착지원센터 매년 5억원, 어업인 정착지원센터 6억원으로 가정
 3. 국비 및 지방비 분담률은 50:50으로 가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어업인 정착지원센터 지원 603백만원 = 영어 정착 및 취창업 지원 1식 110백만원, 어업경영지원 1식 132백만원, 주거문화복지 지원 1식 140백만원, 인건비등 1식 221백만원 (자료: 해양수산부)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후계·청년 농업인 및 어업인 지원사업 및 지원예산 현황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후계·청년 농어업인 지원 관련 사업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사업	사업내용	2021	2022	2023	2024
농림 축산 식품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안정적인 영농 초기 정착을 위해 정착 지원금 등을 청년농업인을 선발하여 지원	33,538	38,899	55,106	95,724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이자보전)	농지 구입·시설 설치 등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	22,013	20,058	51,363	68,870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융자)	고령·은퇴, 이농·직업전환농 및 비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임차하여 청년농들에게 농지 매도·임대 지원	771,785	812,314	857,726	1,241,260
	청년농촌보급자리단지	귀농·귀촌 농촌 청년층의 주거 부담완화 및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안정적 농촌 정착 유도	5,710	800	4,800	15,200
	경영실습임대농장	지방자치단체 자체 부지 또는 농어촌공사 비축농지를 활용하여 시설 신축 또는 개보수하여 청년농에게 임대	4,500	4,500	5,101	—
	청년귀농 장기교육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실습중심의 장기체류형 귀농교육 지원	1,205	1,205	1,547	1,547
	스마트팜 청년보육센터	스마트팜 취·창업을 원하는 청년(만18~39세)을 대상으로 현장실습 위주의 장기(20개월) 보육프로그램 운영	17,982	8,000	8,000	8,000
	임대형 스마트팜	지자체 등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청년농에게 임대	47,696	41,000	64,500	37,000
	청년기업 성장펀드	1차 농산업 또는 농축산물 가공·유통 등 농업 전후방 산업 중사 청년기업 대상 투자	9,000 (모태펀드 출자)	9,000 (모태펀드 출자)	13,500 (모태펀드 출자)	33,600 (모태펀드 출자)
해양 수산부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수산분야 후계인력 양성을 위해 수산업에 종사할 청장년을 발굴하여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자금지원	11,325	10,843	10,136	17,858
	수산업경영인 교육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어촌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수산전문인력 양성 및 기반구축	316	226	226	226
	수산계고교 특성화지원	수산계 고교 졸업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종합승선실습, 현장실습, 국제교류 학습 및 교육실습 장비 등 지원	2,859	2,859	2,651	2,776
	수산계고교 장학금	수산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선도할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수산계열 학교에 재학 중인 우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133	133	133	폐지
	수산계고교 공동 실습선 건조	실습생 안전확보, 교육여건 개선 및 수산후계 인력 양성을 위해 수산계고교 공동실습선 1척 건조	—	500	6,200	5,700
	어업인 일자리 지원센터	온·오프라인으로 구인자-구직자를 연결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수산분야 인력난 해소 및 취업을 제고	373	407	417	378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청년어업인 대상 어촌정착금 지원 (최대 월110만원, 최장 3년)	1,560	1,712	1,926	2,52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후계·청년 농업인 및 어업인 관련단체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지원단체명(사업명)	단체소개 및 지원현황	2021	2022	2023	2024
농림 축산 식품부 ¹⁾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업인교류센터지원)	• (단체소개) 전국 후계농업경영인들이 협동하여 조직한 자주적인 단체 • (사업내용) 민원상담(현장·전화·온라인 등), 비대면 민원서비스 제작·방송 등	500	500	500	500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후계농업경영인문화학술대회지원)	• (단체소개) 전국 후계농업경영인들이 협동하여 조직한 자주적인 단체 • (사업내용) 후계농업경영인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문화학술대회 등 지원	195	195	195	195
해양 수산부	한국수산경영학회	• 수산경영 전반에 관한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 및 보급, 수산정책 수립에 대한 건의, 회원 상호간의 협력 편의 도모 • 수산경영학회 학술대회 개최, 어업인 현장 교육 및 교육자료 배포 지원	12	12	9	9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영어기술 과학화, 경영 합리화, 유통 선진화, 권익신장과 향토문화 계승발전을 통한 복지어촌건설에 기여 • 수산업경영 능력 배양 교육, 해외연수	132	132	135	110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	• 해양수산분야 신지식인 회원 상호간 정보와 기술 공유, 어업인 현장기술 교육 및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 진행	120	120	120	115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 여성어업인 상호연대를 바탕으로 여성의 권익과 지위 향상을 통한 어촌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기여	53	53	53	41
	수협중앙회	•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어업인 및 수산가공업자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	71	71	71	49

주: 1) 단체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은 없으며, 농식품부 사업 수행에 따른 예산 지원으로 작성

2) 2023년 해양수산부 예산 388백만원 사업계획서 검토 후 배분(한국수산경영학회 9백만원,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135백만원,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 120백만원,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53백만원, 수협중앙회 71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제출자료